

논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78호
----------	------

제안연월일 : 2020. 6. 22.(월)

제 안 자 : 최 정 숙 의원

1. 수정이유

- 논산시장이 제출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하려는 제2조의 제7호, 제8호 내용이 제2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혼선 방지를 위해 삭제하고자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조제7항 및 제8항 삭제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6.(생략)	1~6.(현행과 같음)
7.“농산물“이란 시에서 논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말한다.	7. (생략)
8.“가공품“이란 시에서 논산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8. (생략)

및 자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9.“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농산시장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0.“사용권“이란 시장의 인증을 받아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1.“인증관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 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논산로컬푸드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장이 인증한 논산로컬푸드의 상징 표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13.“인증심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9.“인증“이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농산시장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0.“사용권“이란 시장의 인증을 받아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1.“인증관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 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논산로컬푸드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장이 인증한 논산로컬푸드의 상징 표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13.“인증심사원“이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인증신청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